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금 하한액 상향〉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4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금 하한액 상향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상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30.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제1항).

Ⅲ. 검토의견

1.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금 하한액 상향

가. 개정안의 내용

- 현재 대통령령에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의 하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47조의6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 ----- ----- ----- ----- -----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47조의6을 근거로 국내 민간 보안 전문가의 취약점 발굴을 활성화하고, 신규 취약점이 침해 사고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보안 취약점 발굴과 조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도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중임¹⁾.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도>

- (제도개요) 소프트웨어(SW)의 신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민간 보안 전문가들의 취약점 발굴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12.10월~)
-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정보 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신고대상) 국내외 제조사의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인 신규 취약점
※ 홈페이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은 평가 및 포상 대상에서 제외
- (신고접수) 보안취약점 정보포털 → [취약점 신고·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
- (평가기준) 취약점 공격 난이도, 영향도, 해당 SW의 국내외 보급률 등을 종합 평가
- (지급절차) 유효성 검증(과기정통부·KISA) → 1차 평가(과기정통부·KISA) → 2차 평가(외부 위원회)를 거쳐 평가 등급에 따라 포상금 차등 지급 (분기별, 최대 1000만원/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1) · 2026년도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도 관련 예산 편성 내역

- SW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도 운영(평가체계 5회×61백만원+포상금300백만원)=605백만원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포상금 지급 관련 현행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이하 생략)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 보안 취약점 발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25년의 보안 취약점 신고 건수 및 신고대상으로 인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보안 취약점 신고 및 인정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고 건수	1,727	1,963	1,877	1,786	2,525
인정 건수	667	671	566	611	781
인정률	38.6%	34.2%	30.2%	34.2%	30.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고 전문 지식과 시간·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에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취약점 발굴에 투입되는 전문성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입법례에서는 법률에서 지급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규모 및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²⁾, 포상금 지급 근거를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둔 주요 현행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법률에는 지급 근거나 상한액을 규정³⁾하고 구체적인 하한액은 하위법령에 두는 사례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개정안과 같이 포상금 지급의 상·하한액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향후 보안환경이나 사업환경 변화로 포상금 제도 설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포상금 하한액의 인상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하한액 상향 시 기존 5만원 이상 지급 구간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약 2,820만원, 10만원 이상 지급 구간에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약관리법」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해운법」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납자의 은닉채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채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 략)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하는 포상금을 25만원으로 상향할 경우는 약 2,154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취약점의 유효성 검증·분석 및 평가 업무량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운영비의 추가 소요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하한액 상향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소요 예상액>

구분	상향 전	상향 후	계산식	추가 재정소요
하한액	5만원	20만원	188건(5년 평균 지급 건수) × 15만원(인상분)	약 2,820만원
	10만원	25만원	143.6건(5년 평균 지급 건수) × 15만원(인상분)	약 2,154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한, 법률 개정 후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않는 경우 낮은 위험 등급의 취약점에 5만원 또는 1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해당 취약점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 등급 이상의 취약점에만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지급 요건의 강화로 인해 오히려 신고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연도별 포상금 지급구간별 지급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113	215	232	345	35	188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276	149	112	59	122	143.6
3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16	118	103	55	64	91.2
7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62	126	71	75	253	117.4
120만원 이상 ~ 180만원 미만	48	38	11	40	125	52.4
180만원 이상 ~ 330만원 미만	45	22	31	33	138	53.8
330만원 이상 ~ 690만원 미만	7	3	6	4	44	12.8
69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0	0	0	0	0	0
합계	667	671	566	611	781	659.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셋째, 개정안은 시행 전 신고되었으나 시행 후 포상 여부가 결정되거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 하한액 상향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포상금 액수는 취약점의 중요도나 시급성, 예산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여 현행법도 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향후 탄력적인 금액 조정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235